

◎ 中央選管委 内部規律 規則制定權

○ 現行 : 政令

(選舉管理 등이 관한

規則制定權만 있음)

○ 民正黨 : § 113 ① 후단

⑥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法令의 範圍안에서 選舉管理·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,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内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.

○ 民主黨 : 政令

(現行과 같음)

⑥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法令의 範圍안에서 選舉管理·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.

○ 中央選舉管理委員會도 國會나 法院의 마한가지로 憲法機關으로서 獨立된 機能은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内部規律의 ^{관하여서도} 獨自的인 規則制定權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.

* 第63條 ① 國會는 法律이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政黨의 内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.

第107條 大法院은 法律이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訴訟의 程序 節次, 法院의 内部規律과 事務管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.